이용어르신 권리장전

- 1.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(자유권,참정권,사회권)을 보장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
- 2.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, 착취, 학대,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권리
- 3. 종사자나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시설 내, 외부 활동에 신체적,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
- 4. 질병, 연령, 성별 또는 사회적, 경제적 지위의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
- 5. 이용서비스의 방법 및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 받고 알 권리
- 6. 적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최선의 보호서비스를 받을 권리
- 7. 언제든지 장기요양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
- 8.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프로그램 등 참여를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
- 9. 정당한 이유 없이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하여 모든 비밀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
- 10. 기록을 열람하거나 기타 개인적 자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
- 11.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 할 권리